

청소년지도사는 왜 ‘호봉제’ 서 배제되는가

특별기고

오미화

전남도의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불안정 시기를 거치며 신분과 정년 보장 그리고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직종의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호봉제는 근무 기간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임금 상승을 보장해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1987년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임금체계에다.

행정편의주의가 야기한 차별

그러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청소년지도사’이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불안, 심리적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호봉제’ 적용 대상에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은 ‘사회복지사

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호봉제 미적용은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첫째, 노동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다. 청소년상담, 성교육, 자립 지원 등은 높은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이타심과 봉사 정신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따라서 경력에 따른 경험과 숙련도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장기적인 역량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행정편의주의가 야기한 차별이다. 특정 법률에 근거한 설치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이 실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다.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임에도 단지 행정적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상 체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차별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

셋째, 필수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낮은 처우는 경력 있는 전문가들의 이탈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가장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되며, 이는 사회 필수 서비스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 조례 제1조에서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보수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여전히 호봉제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전라남도가 방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과 사회서비스 노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기본적인 처우와 경력 인정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노동의 가치 사회통합 출발점

‘호봉제’ 도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필수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 수준을 가능하는 ‘바로미터’이다.

더 이상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자체와 관련 중앙부처는 호봉제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 노동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즉각 이행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호봉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자 기본원칙이다. 경력에 축적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직업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사설

대선은 끝났다, 이제는 국민통합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하고 파면됨으로써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투표로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승자나 패자 모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로 똘똘 뭉쳐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새 대통령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경직된 남북문제도 풀어야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 관계도 국익을 우선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국민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통합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어지러워진 나라의 틀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불의와 정의가 명확히 가려지고 정의의 토대 위에서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국민통합은 진영으로, 세대로, 남녀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

일진대, 불의를 놓아두고 하는 국민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물론 정치보복은 절대 안 된다. 내란수괴 혐의 등의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고, 판결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법기관이 정상화하면 공정하고 진실한 수사와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의 관여는 불필요한 오해와 정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정치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가 할 일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첩경이다.

이런 점에서 새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말고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을 잘살게 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그는 고집과 불통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대립으로 몰아갔고, 결국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제21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불의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부여받았다. 국민과 함께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아름다운 승복이 새 대한민국 만든다

제21대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모두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은 물론 그들의 소속 정당이나 지지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선의 영예는 결국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5명의 후보들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취임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 정상적인 대선이었다면 취임 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다. 그만큼 취임 초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 지

지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결과를 받아들이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굳이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일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망상에 불과하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립을 격화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만 부추긴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까지 헤치게 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에 나서 경쟁했던 후보들은 물론 국민 모두 새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오천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승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기고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앓과 뿌리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우뚝한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담임 교사의 제자들이 남긴 편지다. 제자들은 고인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던 것인지 기억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다. 오늘날 교단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은 절규이며, 교권 보호의 시급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경고다.

2023년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비극적 죽음은 큰 충격과 자성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제·개정하며 교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법의 핵심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도우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교육, 교실 존엄에서 출발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주 교사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고 며칠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또 다른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가 생활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무분별한 고소,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진정과 조사가 반복된다. 가르치는 일을 위협하는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교사가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의 권한과 존엄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이는 단지 법령의 허술함 때문만이 아니다. 교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교사의 문제로 방지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큰 원인이다.

현재 교육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은 단지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적 문구로만 남겨두었고, 교원지위법 제14조는 ‘교권 침해’라는 용어조차 피하고 ‘교육활동 침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용어 선택은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활동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탱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은 교원, 학습자, 보호자 각각의 역할이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은 교사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행위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공동체의 작동은 중단된다.

이제는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전문가’로서 존중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다. 이는 특권이 아닌 책무이고, 학생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부여된 공적 권한이다. 교사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경찰의 단속권과 같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교사의 권한이 인정되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교육이 가능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 개정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다. 사회 전체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인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교실의 평화 없이는 교육의 미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에 선 수많은 교사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교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존엄과 안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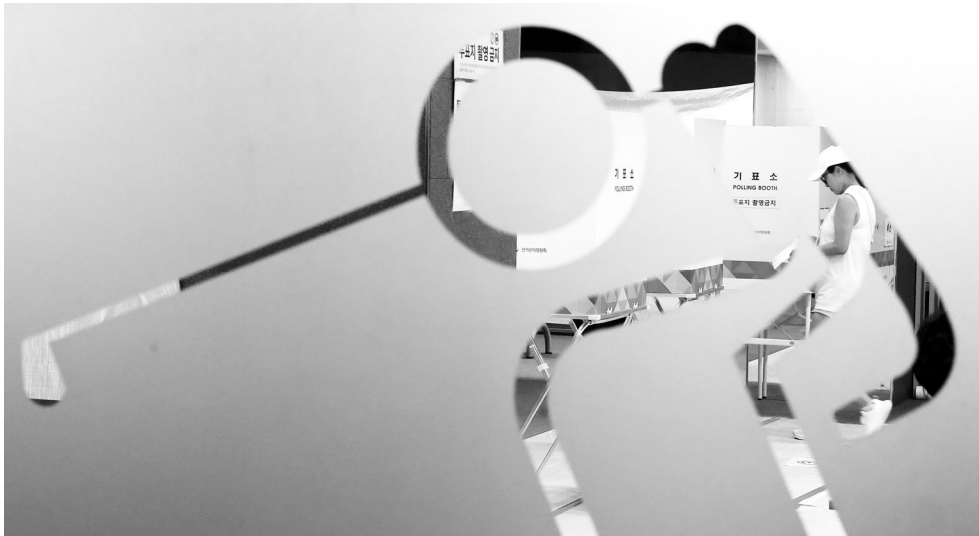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사진 속 세상



골프연습장서도 소중한 한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 실내골프연습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편집국장 박간재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